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3. 11.

이 선 주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이선주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에너지시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 이용 촉진,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2조에는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임된 지역에너지시책을 분야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
-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공분야, 교통 및 건축분야, 신·재생에너지분야 시책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비용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달서구 에너지센터 설치·운영 사항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2023년 7월 10일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여 10월 6일에 검토 완료된 조례가 도달되었으며, 추가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게 위임된 사무이자 구비되어야 할 필수 조례로서,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여 급변하는 국제에너지시장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, 나아가 에너지 시책의 환경친화성,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도 제고함으로써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
-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

【이선주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137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3.

발의자 : 이선주, 남현주, 황국주, 장호섭,
서보영, 고명욱,김장관, 이진환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나.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에너지시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 이용 촉진,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위임된 지역에너지시책을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공공분야, 교통 및 건축분야, 신·재생에너지분야 시책 사항을 마련함 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라. 달서구 에너지센터 설치·운영 사항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임 1

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에너지시책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분야별로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해야 한다.

제3조(공공분야 시책) 구청장은 공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
1.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
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의 보급 및 사용
3. 업무용 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
4. 그 밖에 공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제4조(교통 및 건축분야 시책) ① 구청장은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
1. 자동차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

교통 체계 구축

2.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, 요일별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
3.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편의 증진
4. 그 밖에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② 구청장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신·재생에너지분야 시책) 구청장은 신·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
1. 신·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장려
2. 지역 내 신·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
3. 그 밖에 신·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제6조(비용지원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
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
3.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

제7조(협약) 구청장은 관련 공공기관,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 등과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8조(달서구 에너지센터)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에너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사업 지원 업무

2.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지원 업무

3. 에너지 현황 관련 통계 작성 업무

4.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, 운영,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에너지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.

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제28조(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)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(이하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한다)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,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

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생략 -

3. 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” (이하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”라 한다)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(이하 “신·재생에너지”라 한다)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·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생략 -

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